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설명서-079호(2026.06.17)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요약 상품설명서

[기본정보]

(2026.06.22 기준, 세전)

구 분	내 용		
상품특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적립식품		
가입대상	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계약기간	5 년	상품유형	적립식예금 (자유적립식)
가입금액	1천원 이상 ~ 70만원 이하 (천원 단위) ※ 단「청년희망적금」만기해지자가「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경우,「청년희망적금」만기지급금이내에서 최초납입금액으로 일시납입이 가능함 (상세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		
적립한도	월 1천원 ~ 70만원 이하, 연간 840만원 이하 (가입일 기준으로 1년)		

기본금리

기 간	최초 3년간【고정】	3년 초과~5년 이내【매1년마다 변동】
이자율	연 4.50%	경과시점의 고시된 금리로 1년 단위 변동 적용

※ 가입일 및 변동시점 (가입후 3년 ,4년 경과시점)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최대 연 1.50% (상세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

급여(가맹점대금) 이체	카드 결제	목돈마련 응원	마케팅 동의	소득+플러스
연 0.60%	연 0.20%	연 0.10%	연 0.10%	최대 연 0.50%

정부 기여금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본인 적립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 지급 비율로 계산하여 적립되고, 만기(특별중도) 해지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원 (단, 외국인은 지급 비대상)	
예금담보대출	O	납입액의 100%까지 가능
부분인출	O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 가입 2년이상 경과자 한정
세제혜택	O	비과세상품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99-1111, 0, 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금리

(단위 :연, %)

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주1) x 경과율(주2) (단, 연 0.20% 미만시 연0.20% 적용)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11개월 이상 경과시
60% 적용	70% 적용	90% 적용

(주1) 차등율 :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주2) 경과율 : 경과일수 / 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 단,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시, 각 기간별 고시된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3년 초과~5년 이내 매1년 마다 변동)

만기 후 금리

-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½
-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¼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설명서-079호(2026.06.17)

『하나 청년도약계좌』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예시:유선 가입시는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등),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하나 청년도약계좌』
- 상품특징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2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증서)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6.06.22 현재, 세전)

구분	내 용
가입대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①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항목의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를 말함 (최대 6년 한도)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주1)을 충족**하는 자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않을 것 ('정부기여금 지급기준'표의 소득구간 ❶ 적용)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일 것 ▶ 가구소득은 가구원(주2)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연금소득 · 종교인 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주2) 가구원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단, ※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으로 판단 ※ 주민등록표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주3)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4)"에 해당하지 않는 자 (주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주4)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자격 충족여부 확인
가입제한	• '청년희망적금' 보유한 경우 가입 불가 (전 금융기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에 한해 가입 가능 (여권번호로 고객정보 등록된 경우 가입 불가)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스마트폰뱅킹(하나원큐),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 (단, 외국인은 영업점에서만 가능) • 해지 : 영업점, 스마트폰뱅킹(하나원큐), 인터넷뱅킹

<table>
<tr><td>계약기간</td><td>5년</td><td>예금종류</td><td>자유적립식</td></tr>
<tr><td>이자지급방식</td><td colspan="3">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td></tr>
<tr><td>가입금액</td><td colspan="3">1천원 이상 ~ 70만원 이하 (천원 단위)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이내에서 최초납입금액으로 일시납입이 가능함</td></tr>
<tr><td>적립한도</td><td colspan="3">월 1천원 ~70만원 이하, 연간 840만원 이하 (가입일 기준으로 1년)
예시) ‘23. 7.10 가입시/1년차 : ‘23.7.10~‘24.7.9, 2년차 : ‘24.7.10~‘25.7.9…, 5년차 : ‘27.7.10~‘28.7.9</td></tr>
<tr><td>일시납입 신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td><td colspan="3">「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규 가능
※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은행 앱에서 신청 후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ylaccount.kinfa.or.kr)를 통해 일시납입 정보를 등록해야 일시납입 가입신청이 완료됨
• 일시납입 금액을 선납으로 인정하여, 일시납입으로 선납한 기간 동안 별도 추가납입을 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한 일시납입 금액만큼 가입 월을 차감
•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가입 시 적용되는 지급기준의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일시납입 기간 종료 전에 특별중도해지 할 경우 가입유지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만 지급
• 「청년희망적금」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이 중지됨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예시】
※(가정) 매월 50만원, 13개월, 총 650만원 일시납입하는 경우 (만 13개월 경과 후부터 추가납입 가능)
<table>
<tr><th>가입일</th><th>1년차</th><th>2년차</th><th>일시납입 기간</th><th>추가납입</th></tr>
<tr><td>2024.2.22</td><td>2024.2.22
~2025.2.21</td><td>2025.2.22
~2026.2.21</td><td>2024.2.22
~2025.3.21</td><td>2025.3.22~2025.3.31일 동안
월 70만원이내 납입가능</td></tr>
</table>
</td></tr>
<tr><td>재가입</td><td colspan="3">•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가입신청 가능
•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旣) 가입기간 만큼 차감한 비율(이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조정비율 = (계약기간-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 기 가입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납입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 가입기간 :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수로 환산하여 올림한 기간으로, 가입기간 산정은 ‘월’ 기준이며, 일단위는 월로 올림하여 계산
[예시] ‘23.8.1 가입후 ’23.9.15해지→재가입시 2개월을 차감하여 계산한 조정비율 적용
※ 2회이상 재가입할 경우 각각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합산</td></tr>
<tr><td>기본금리</td><td colspan="3">
<table>
<tr><td>기 간</td><td>최초 3년간 【고정】</td><td>3년 초과~5년 이내 【매1년마다 변동】</td></tr>
<tr><td>이자율</td><td>연 4.50%</td><td>경과시점의 고시된 금리로 1년 단위 변동 적용</td></tr>
</table>
※ 가입일 및 변동시점(가입후 3년, 4년 경과시점)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
</td></tr>
<tr><td>우대금리</td><td colspan="3">① 아래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1.50%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시 제공(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table>
<tr><th>우대항목</th><th>우대금리</th><th>내용</th></tr>
<tr><td>급여(가맹점대금) 이체</td><td>연 0.60%</td><td>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6회차 이상 급여입금(주5) 또는 가맹점(결제)대금 입금 실적을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td></tr>
<tr><td>카드 결제</td><td>연 0.20%</td><td>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6회차 이상, 월 합산 10만원 이상의 하나카드 결제 실적(하나머니 충전방식 제외)을 보유한 경우</td></tr>
<tr><td>목돈마련 응원</td><td>연 0.10%</td><td>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직전 1년간 적금 또는 예금을 미 보유한 경우
(단,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외)</td></tr>
<tr><td>마케팅 동의</td><td>연 0.10%</td><td>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td></tr>
<tr><td>소득+플러스</td><td>최대
연 0.50%</td><td>이 예금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주6)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
- 5회 : 0.5% / 4회 : 0.4% / 3회 : 0.3% / 2회 : 0.2% / 1회 : 0.1%</td></tr>
</table>
(주5) 급여 입금 인정기준
1)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
2)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3)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주6)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② 청년미래적금 가입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우대금리 조건은 특별중도해지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대금리를 산출 및 적용합니다. 단, 가입일로부터 특별중도해지일까지 우대금리의 조건 달성 실적이 없는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td></tr>
</table>

정부기여금

①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본인 적립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 지급 비율로 계산하여 적립하고, 만기(특별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의 100%를, 3년이상 경과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의 60%를 이자소득과 함께 지원 (단, 외국인은 정부기여금 지원 비대상)

② 정부기여금은 신청 시점 및 가입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됨 (단, 신청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

③ 정부기여금 지급기준

소득구간	개인소득		정부기여금(Ⅰ) 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Ⅰ) 지급비율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❶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Ⅰ) 산정 기준금액의 6.0%
❷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Ⅰ) 산정 기준금액의 4.6%
❸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Ⅰ) 산정 기준금액의 3.7%
❹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Ⅰ) 산정 기준금액의 3.0%
❺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소득구간	개인소득		정부기여금(Ⅱ) 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Ⅱ) 지급비율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❶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 중 40만원 초과금액	· 정부기여금(Ⅱ) 산정 기준금액의 3.0%
❷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 중 50만원 초과금액	· 정부기여금(Ⅱ) 산정 기준금액의 3.0%
❸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 중 60만원 초과금액	· 정부기여금(Ⅱ) 산정 기준금액의 3.0%
❹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미지급	미지급
❺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④ 유의사항

-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정부기여금은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함. 단,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
- 정부기여금이 부정 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주7)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의 지급비율이 변경 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적립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 중도해지시 정부기여금 미지급(특별중도해지 제외) 단, 가입 3년 경과 후 중도해지시 정부기여금의 60%만 지급
- 부분인출시 인출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환수됨. 다만, 가입 3년 경과 후 부분인출시 인출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 중 40%는 환수되며, 나머지 60%는 해지시점에 지급
- 상품 가입후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확인이 되어 납입중지 처리시, 정부기여금 미지급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않으며 이에 따라 가입한 사람은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6%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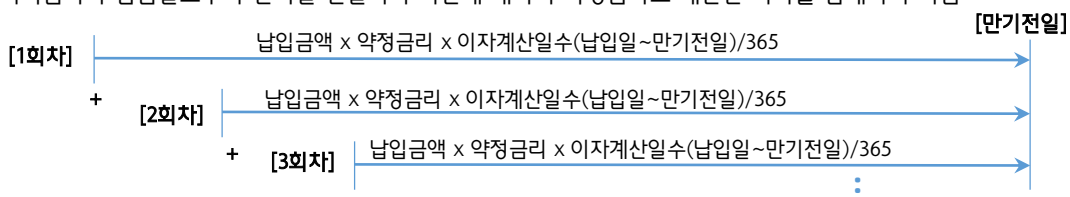
(주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등

【정부기여금 지급 예시】

가입년차	총급여 (소득기준)	적금 월납입액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월 지급 정부 기여금	년간 지급 합산액	정부기여금 합산액
1년차	2,000만원	월 40만원	6.0%	월 24,000원	288,000원	910,800원
2년차	3,500만원	월 40만원	4.6%	월 18,400원	220,800원	
3년차	4,500만원	월 50만원	3.7%	월 18,500원	222,000원	
4년차	5,500만원	월 50만원	3.0%	월 15,000원	180,000원	
5년차	6,500만원	월 50만원	미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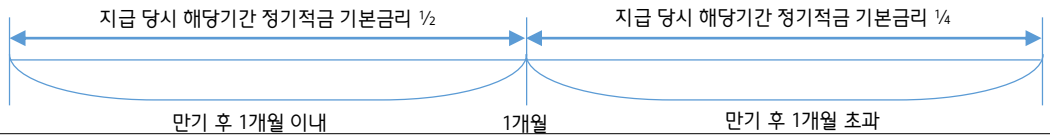
이자계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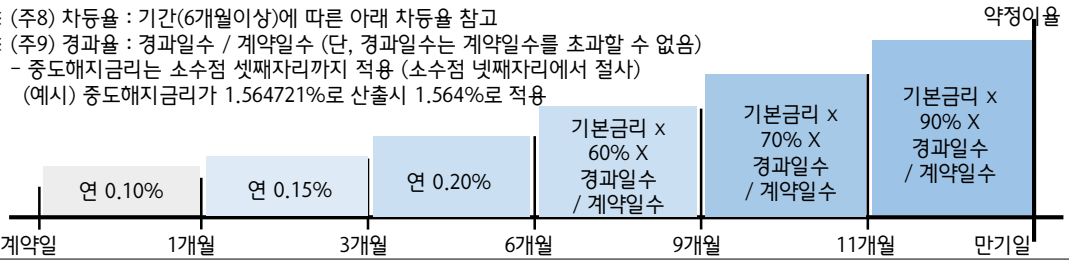
저축금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만기 후 금리

-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½
-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¼



<table>
<tr><td>중도해지금리</td><td>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미만절사)
※ 단,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시, 각 기간별 고시된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3년 초과~5년 이내 매1년 마다 변동)
(단위: 연, %)
<table>
<tr><th>기간</th><th colspan="3">중도해지금리</th></tr>
<tr><td>1개월 미만</td><td colspan="3">연 0.10%</td></tr>
<tr><td>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td><td colspan="3">연 0.15%</td></tr>
<tr><td>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td><td colspan="3">연 0.20%</td></tr>
<tr><td>6개월 이상</td><td colspan="3">가입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주8) x 경과율(주9)
(단, 연 0.20% 미만 시 0.20% 적용)</td></tr>
<tr><td>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td><td>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td><td>11개월 이상 경과시</td></tr>
<tr><td>60% 적용</td><td>70% 적용</td><td>90% 적용</td></tr>
</table>
※ (주8) 차등율 :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 (주9) 경과율 : 경과일수 / 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td></tr>
<tr><td>특별
중도해지</td><td>계약기간 중 아래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되지 않음
※ 단, 아래의 ①, ② 사유의 특별중도해지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①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②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항목의 사유(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해지)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 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가입자의 주택 취득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
사.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에 따라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td></tr>
<tr><td>세제혜택</td><td>• 비과세저축으로 가입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단, 아래의 경우 비과세 미적용
① 만기일 이후 이자
② 중도해지계좌 (단, 가입 3년 이상 경과자의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제외)
③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이자(단, 가입 3년 경과 후 부분인출하는 경우 제외)
④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단, 조세특례법 제 91조의 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td></tr>
<tr><td>부분인출</td><td>• 가능 (가입 2년 경과자에 한해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1회 인출 가능, 법적제한 계좌는 거래불가)
• 단, 부분인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 및 과세여부, 정부기여금 환수여부 등이 상이함
- 가입 3년 미만 :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환수, 중도해지금리 적용, 이자소득세 과세
- 가입 3년 이상 :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의 40% 환수, 기본금리 적용, 이자소득세 비과세</td></tr>
<tr><td>만기앞당김지급</td><td>불가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만 해지 가능)</td><td>재예치</td><td>불가</td></tr>
<tr><td>양도</td><td>불가</td><td>명의변경</td><td>불가</td></tr>
<tr><td>담보제공
(질권설정)</td><td colspan="3">가능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질권설정 가능, 예금잔액범위 내 예금담보대출 가능)</td></tr>
<tr><td>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td><td colspan="3">•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단,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td></tr>
<tr><td>휴면예금 및
출연</td><td colspan="3">•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td></tr>
</table>

통장발행	통장 미발행 가능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없음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0,1), 고객의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3 유의사항

- 상품가입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후 해지 가능합니다.
 (만기일전 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중도해지이율 적용됩니다.)
- 이 적금 가입시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것으로 봅니다.
- 이 예금은 비과세 혜택 및 본인 적립금에 매칭하여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본인 적립금 미납입시, 정부기여금 지급되지 않음)
- 이 예금은 '하나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등의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한 정부기여금 지급기준 및 세제혜택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하여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정정(취소, 변경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하나은행 포용금융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111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